

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개월
신청인	기관·단체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
	소재지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담당자 성명 및 직위	전화번호	
	자본금 (억원)		
	종업원 수 (명)		

「진로교육법」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2.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1부 3.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1부 4.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